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4. 9. 13.
행 정 위 원 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년 8월 9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2004년 9월 13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108회(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2004.9.15.)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가. 개정이유

-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징수방법이 지방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였으나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가 2004. 5. 25.자로 부담금의 징수방법이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토록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도 관련 조례를 서울시 개정조례에 맞춰 개정함으로써 민원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제3조의2 ①항 후단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7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부분을 삭제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남식)

- 본 개정조례안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징수하는 가산금 징수방법에 있어
- 현재의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체납된 금액에 대해 납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징수와 납부금액 30만원 미만일 때 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규정을
- 상위법인 도로법 제7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의 징수와 체납된 금액이 50만원 미만일 때 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도록 개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으로 내용과 시기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17
------------	-----

제출년월일 : 2004. 8. 9.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징수방법을 지방세법의 규정을 적용하던 것을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징수하는 가산금에 대한 징수방법으로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토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함(제3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도로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도로법(제78조), 국세징수법(제21조, 제22조), 지방세법 (제2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04. 7. 15 ~ 8. 3) : 의견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의2(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78조에 의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u>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u> ②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의2(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 <u><삭 제></u> ②(현행과 같음)